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노동이사 선임시 15인 초과 이사회 구성 가능〉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579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1. 노동이사 선임시 15인 초과 이사회 구성 가능<br>(안 제18조제1항) ..... | 2 |



##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10. 7.

다. 회 부 일 : 2024. 10. 8.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2월 3일 현행법을 개정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를 추천·임명하는 경우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이하 “노동이사”라 함)을 포함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는 현행법의 규정에 따라 이미 15인의 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이사를 추천·임명할 수 없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노동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15인을 초과하여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 Ⅲ. 검토의견

#### 1. 노동이사 선임시 15인 초과 이사회 구성 가능(안 제18조제1항)

| 현 행                                                                                                                                                                                                                                                                                                               | 개 정 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인을 초과하여 이사회 구성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이나 직종별 기관의 연합으로 설립된 공기업·준정부기관</li> <li>-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당시 이사 정수가 15인을 초과(단, 당시 재직 이사의 임기까지만으로 한정)</li> <li>- 공기업 지정 당시 비상임이사가 없어 비상임이사 2명을 선임하는 경우</li> </ul> </li> </ul> <p>&lt;신 설&gt;</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인을 초과하여 이사회 구성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과 같음)</li> <li>- (현행과 같음)</li> <li>- (현행과 같음)</li> <li>- <u>노동이사를 선임함으로써 15인을 초과하는 경우</u></li> </ul> </li> </ul> |

현행법 제18조<sup>1)</sup>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 인원을 기관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도록 하되, 15인을 초과하여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예외 요건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노동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2022년 법률 개정을 통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를 추천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구성) ① 이사회는 기관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인을 초과할 수 있다.
1.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이나 직종별 기관의 연합으로 설립된 공기업·준정부기관
  2.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이사 정수가 15인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정될 당시 재직 이사의 임기가 보장되는 기간 내에 한정한다.
  3. 제25조제4항에 따라 비상임이사를 선임함으로써 15인을 초과하는 경우

하거나 임명하는 경우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이하 “노동이사”라 함)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 제도가 도입되었음.

그러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는 현행법의 규정에 따라 이미 15인의 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이사를 추천·임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개정안은 15인을 초과하여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예외 조건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노동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노동이사제 도입 당시 개정 법률에서 새로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적용례를 두었으므로 현행법에 따른 15인 이사 수 제한 하에서도 노동이사제 도입이 가능한 상황임.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당시 개정 법률은 부칙<sup>2)</sup>에 적용례를 두어 개

---

2) 부칙(법률 제18795호, 2022.2.3.)

제3조(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정 법률 시행 이후 새롭게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존에 15명의 이사가 임명되어 있는 경우에도 기존 비상임이사의 임기가 도래하는 경우 노동이사를 임명하여야 하므로 현행 15명의 이사 수 제한 하에서도 노동이사제 도입이 가능함.

실제 2024년 말 기준 이사회 정수가 15명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등 13개 기관<sup>3)</sup>으로, 이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하거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중인 3개 기관을 제외한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등 1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15명의 이사 제한 하에서 노동이사제를 이미 도입하였음.<sup>4)</sup>

둘째,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경우 초과할 수 있는 이사 수의 제한이 없어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노동이사제 도입 취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음.

개정안은 노동이사를 선임함으로써 15인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 수가 15인을 초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대 이사 수는 정해놓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노동이사를 선임하여 15인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이사 수 제한을 받지 않아 노동이사가 아닌 이사를 다수 선임하게 되어 노동이사의 비중이 줄어드는 등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이사제

---

3) 참고자료1

4)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대다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기존 이사회 정원 내에서 노동이사를 이미 선임하여 운영 중에 있고, 동법 개정 이후 노동이사 선임을 위해 이사회 정수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 기관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의 도입 취지를 약화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공공기관 이사 수를 15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만 예외를 허용한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에서 공공기관의 이사 수를 15인 이내로 규정한 것은 이사 수를 적절하게 제한하여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이사 정수가 15인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 당시 비상임이사가 없는 공기업이 지정 후 3월 이내에 비상임이사 2인 이상을 선임함으로써 15인을 초과하는 경우 등으로 예외 사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8조(구성) ① 이사회는 기관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인을 초과할 수 있다. | 제18조(구성) ① -----<br>-----.<br>-----<br>-----.             |
| 1. ~ 3.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
| <신설>                                                                                   | 4. 제25조제3항제2호 및 제26조제3항 후단에 따른 비상임이사를 선임함으로써 15인을 초과하는 경우 |
| ② ~ ④ (생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문의처

02)6788-5157

## 참고 1

## 공기업 · 준정부기관, 이사회 정수 15명인 기관 현황

| 기관명         | 유형  | 기관장<br>(A) | 상임이사<br>(B) | 비상임이사<br>(C) | 이사회 정수<br>(A+B+C) | 노동이사<br>도입여부 |
|-------------|-----|------------|-------------|--------------|-------------------|--------------|
| 한국도로공사      | 공기업 | 1          | 6           | 8            | 15                | ○            |
| 한국마사회       | 공기업 | 1          | 6           | 8            | 15                | ○            |
| 한국전력공사      | 공기업 | 1          | 6           | 8            | 15                | ○            |
| 한국철도공사      | 공기업 | 1          | 6           | 8            | 15                | ○            |
| 한국토지주택공사    | 공기업 | 1          | 6           | 8            | 15                |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준정부 | 1          | 6           | 8            | 15                | ○            |
| 한국국제협력단     | 준정부 | 1          | 4           | 10           | 15                | ○            |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준정부 | 1          | 0           | 14           | 15                | ○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준정부 | 1          | 0           | 14           | 15                | ○            |
| 한국수자원공사     | 공기업 | 1          | 6           | 8            | 15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 준정부 | 1          | 5           | 9            | 15                | X*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준정부 | 1          | 3           | 11           | 15                | X*           |
| 한국연구재단      | 준정부 | 1          | 0           | 14           | 15                | X*           |

※ 알리오 '임원현황' 공시 항목의 기관별 공시자료를 근거로 분석·작성함

\* 노동이사 미도입 사유: 건보공단·심평원(개별설치법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필요)  
연구재단(임추위 구성 완료)

**참고 2****노동이사 미임명 기관 세부 현황****1. 준정부기관(13개)**

| 미임명기관         | 지연사유                 |
|---------------|----------------------|
|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법 개정 필요(국민건강보험법)     |
| 2. 국민건강보험공단   | 법 개정 필요(국민건강보험법)     |
| 3. 국민연금공단     | 법 개정 필요(국민연금법)       |
| 4. 근로복지공단     | 법 개정 필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5. 한국산업인력공단   | 법 개정 필요(한국산업인력공단법)   |
|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법 개정 필요(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
| 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법 개정 필요(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
| 8. 도로교통공단     | 노조 후보자 추천 중          |
| 9.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근로자 과반 동의 진행 중       |
| 10. 한국연구재단    | 임추위 구성 완료            |
| 11. 한국장학재단    | 임추위 구성 추진 중          |
| 1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임추위 구성 추진 중          |
| 13. 한국재정정보원   | 노조 후보자 추천 중          |